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의3제3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일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동일 사업장  
안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일일처  
리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제41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자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  
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사.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제41조제1항제2호 각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마. 법 제30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  
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  
정 및 비용징수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징수 및  
반환 등

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 차액반환

- 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 차.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 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 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 파.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 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 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 너.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 더.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 러.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 머.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 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 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 어.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제41조제2항제5호 각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 내지 제

13호를 각각 삭제한다.

-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회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 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조건의 부여 및 관련서류의 접수
-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 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 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 자.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
- 차.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 카.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 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 파.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 하.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추가예치명령 또는 반환
- 거.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 너. 제2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반환

더.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의 접수

별표 3 제1호가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 제외)

사.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차.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하. 전기 · 가스업

별표 4 (16)란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0조의3제4항”으로 하고, 동표 (17)란중 “제30조의3제4항”을 “제30조의3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4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p>	<p>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 · 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1일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동일 사업장안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일일처리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p> <p>2.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p> <p>3. 매립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p> <p>제41조(권한의 위임) ①----- ----- ----- -----.</p> <p>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p>

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 및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의2. · 1의3. (생 략)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의2. · 1의3. (현행과 같음)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나. 삭제

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  
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  
치·납부·징수 및 반환 등

## 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및 차액반환

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사. 삽제

## 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일

2. -----

-----

-----

-----

-----

-----

-----

-----

-----

## 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결과 의 접수

## 나.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  
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  
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마. 법 제30조의3제9항의 규정  
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

##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

정

- 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대상시설의 통지
- 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 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 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  
리
- 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 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  
용의 충당, 차액반환
- 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
- 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  
구서의 수리
- 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  
정서의 교부

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 이행 보증금의 예  
치 · 징수 및 반환 등
- 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및 차액반환
- 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 차.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  
정
- 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대상시설의 통지
- 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 파.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 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  
리
- 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p><u>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u></p> <p><u>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u></p> <p><u>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u></p> <p><u>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u></p> <p>3. · 4. (생략)</p> <p>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p>	<p><u>너.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u></p> <p><u>더.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u></p> <p><u>러.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 구서의 수리</u></p> <p><u>머.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 정서의 교부</u></p> <p><u>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u></p> <p><u>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u></p> <p><u>어.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u></p> <p><u>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 의 결정 및 통보</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p>
--	---

<p>1. ~ 4. (생략)</p> <p>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p> <p>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p> <p>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p> <p>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p> <p>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 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p> <p>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p> <p>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p>-----</p> <p>-----</p> <p>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p> <p>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조건의 부여 및 관련서류의 접수</p> <p>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p> <p>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p> <p>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p> <p>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 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p> <p>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p>
---	---

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 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
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	자.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
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	차.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 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타.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 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카.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 에 의한 통보의 접수
파.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	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파.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하.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추가예치명령 또는 반환
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거.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더.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 에 의한 통보의 접수	너. 제2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반환
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더.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
며. 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 및	

<p><u>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추가예치명령 및 반환</u></p> <p>6. ~ 9. (생략)</p> <p><u>10.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u></p> <p><u>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u></p> <p><u>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u></p> <p><u>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u></p> <p>14. • 15 (생략)</p>	<p><u>청의 접수</u></p> <p>6. ~ 9.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14. • 15. (현행과 같음)</p>
---	---